◉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52호

2026년 9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6-028호(어선 통령호 · 고무보트 선명무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통령호 · 고무보트 선명무 충돌사건

피요청자 : 윤**(****. *. **)

경** *** **** ***** **

귀하가 소유자 겸 조종자로 승선 중이던 고무보트가 2025. 10. 16. 16:46경 영흥수도 내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 중 영흥수도를 따라 항행 중이던 통령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이던 통령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귀하의 고무보트를 피하지 못해 발생하였으나, 정류 중인 고무보트 또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통령호에 대한 피항협력 조치를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는 고무보트를 정류한 상태로 낚시할 때도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